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주은행

2. 조치일 : 2023. 11. 14.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외 검토 체계 개선

제주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담당자가 AML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추출된 거래를 검토한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보고제외 사유를 기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보고제외 사유에 비정상적인 거래의 유형, 해당 거래의 배경 및 목적 등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목적에 따른 거래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고

A부에서 분기별로 보고제외 건에 대해 점검(테마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보고제외 사유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없이 점검 대상 거래내역을 상세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보고제외 검토 사유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여 보고 대상임에도 검토가 미흡하여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외 검토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길 바람

(2)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① 고객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부재(B팀 소속 1명 겸직 수행)하고, 규정 미숙지 또는 검증서류 관리 미흡 등으로 고객확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기재되어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고객확인 업무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② 시스템 통제 외에 비대면 고객확인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고객확인 정보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절차가 미비하여 일부 고객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타당성에 의심이 가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비대면 고객확인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업무처리 일관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고객확인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여 비대면 고객확인 업무 적정성을 강화하시기 바람

③ 재이행주기 경과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안내 및 거래제한 조치 등 관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고객확인 재이행이 미흡하므로

재이행주기가 일정기간 경과한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④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관리가 미흡하고, 모형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고객위험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평가모형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요소를 매뉴얼 등에 반영하고, 고객의 위험도가 모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모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3) 신상품 등에 대한 위험평가업무 개선

제주은행은 신규 상품 및 서비스(이하, 신상품 등)를 출시하는 경우 사전에 상품개발부서 등에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A부가 이를 반영하여 최종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크리스트의 입력값이 통제되지 않고, 위험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수식에 오류가 있으며, 작성된 체크리스트 및 최종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상품 등에 대한 위험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사용되는 체크리스트의 입력 및 합산 수식을 점검하고 작성된 체크리스트와 최종 자금세탁 위험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람